

가평군 기금성과분석 보고서



기 획 감 사 실
[예 산 팀]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및 조성목적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 설치연도 : 2009. 10. 01. 조례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일부개정 : 2010.10.31. 조례 제2208호
(가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른 일부개정)
- 일부개정 : 2013.07.10. 조례 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 2014.09.30 조례 제2372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일부개정)
- 일부개정 : 2015.08.10 조례 제2470호
(재난관리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적정에 따른 일부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상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0,967	2,625	1,606	1,019	21,985	2,192	666	1,526	

II.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 통합관리기금 총 예치액 : 10,871백만원(12월말 기준)
- 연도별 예탁사업 현황
 - 2012년 : 2,100백만원 (설악면 복지회관 건립 외 1건)
 - 2014년 : 5,000백만원 (가평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외 1건)
 - 2015년 : 5,000백만원 (Next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 발전방안

- 가평군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 기금의 존치필요성

- 『가평군통합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각 기금의 보유자금 중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통합 운용·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일반회계 예탁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해 당 없 음
	'14	재난·재해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적정 통보
	'15	재난·재해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적정 시정조치(조례 개정등)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 통합관리기금 용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속 운영

(표4-1)

(단위: 백만원)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11,035	%	16,088	%	17,478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3,297	30	3,297	21	4,297	25
	예치금회수	4,731	43	9,555	59	10,556	60
	예수금	2,510	23	2,698	17	2,108	12
	이자수입	497	4	538	3	517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035	%	16,088	%	17,478	%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5,000	31	5,000	29
	예치금	9,555	87	10,555	66	10,871	6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1,480	13	533	3	1,607	9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지방채상환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및 조성 목적 :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적립
- 설치연도 : 2000. 12. 28. 조례 제1685호
(가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일부개정 2001.10.01 조례 제1744호
- 일부개정 2009.07.07 조례 제2062호
- 일부개정 2009.10.01 조례 제2071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일부개정 2010.08.0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일부개정 : 2013.07.10. 조례 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 2014.09.30. 조례 제2372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상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53	207	0	207	559	213	0	213	

II.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 지방채상환기금 총적립액 : 559백만원
 - 이자수입 : 13백만원
-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목적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재원을 적립하여 지방채를 조기에 연차적 상환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가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적립	고금리 지방채 일부상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적립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적정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가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생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적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지속 운영

(표4-1)

(단위:백만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1,033	%	204	%	207	%	
	전입금			200	98	200	96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1,000	97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33	3	4	2	7	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33	%	204	%	207	%	
	고유목적사업비							
	용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33	3	204	100	207	100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1,000	97					
	예수금원리금상환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조례 제1613호)
- 설치 및 조성목적 :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증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
- 설치연도 : 1991. 6. 2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상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447	386	131	255	6,702	221	145	76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가급적 계량수치)

-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용자금 지원 : 용자금 지원 8.3백만원
-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 장애인 5개단체 복지사업 추진 23백만원
- 노인복지 지원사업 : 대한노인회 활동 지원 22백만원,
어버이날 행사지원 4.1백만원
- 아동복지 지원사업 : 어린이날 큰잔치 13백만원,
어린이집 한마음잔치 10백만원
- 여성복지 지원사업 : 여성지도자 선진지 견학 8백만원,
가족기능증진사업 “여왕의 교실” 14백만원,
여성장애인 일상생활훈련 프로그램 5백만원
-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 아하자활근로사업단 지원 15백만원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지원 사업 : 문패달아주기사업 5백만원,
호국보훈의식 향상 문화행사 5백만원

○ 잘된점, 미흡한점, 발전방안, 향후조치계획

- 전체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예산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 어린이날 큰잔치는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어린이집 한마음큰잔치는 아동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화합행사와 아동의 신체활동 영역별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으로 참여도가 높았음
-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부족한 여성장애인 대상으로 가정내에서 주부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기능 강화와 사회 적응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음
-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및 노인행사를 지원하여 가평군노인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여가활동 증진
- 장애인단체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여가선용 및 친목을 도모하고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 향상과 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기여함.
-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용자금의 장기미상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용자 신청자는 용자받은 익월부터 월정액을 장기납부하도록 자동이체 신청 독려함
- 문패달아주기 사업 시작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높임

○ 미진사항 및 문제점

- 노인이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의 지원 필요
- 용자사업: 10년이상 장기 체납자 13명에 대해 장기 분납 독려 및 주소지 확인 필요
- 행사성사업보조 위주가 아닌 의식향상 및 의미있는 사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조치계획

- 기금의 합리적 운영으로 복지욕구 해소
- 용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연체 감면을 통한 납부 유도 및 1회 납부금액 조정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2	86	56%	126	131	10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2015년 사회복지기금 목표 및 기대효과는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 증진 사업 확대를 위한 복지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 및 권익증진에 일조를 다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비 성격의 운영지원을 원칙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임

2015년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5개단체), 대한노인회 활동비, 어린이날 큰잔치 및 어린이집 한마음잔치, 여성지도자 선진지 견학 및 가족기증증진사업, 국가유공자 문패달아주기, 호국보훈의식 향상 문화행사등 사업비 성격의 운용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목표에 맞게 이루어져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14년	○아하자활근로사업단지원(10백만원)	○아하자활근로사업단지원(10백만원)	100%
	'15년	○아하자활근로사업단지원(10백만원)	○아하자활근로사업단지원(15백만원)	150%
저소득주민생 활안정지원	'14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용자사업 (50백만원, 5명)	○대상자 없음	0%
	'15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용자사업 (20백만원, 5가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용자사업 (8.3백만원, 3가구)	41.5%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14년	○장애인복지지원사업(20백만원, 5개단체)	○장애인복지지원사업(18백만원, 5개단체)	92%
	'15년	○장애인복지지원사업(23백만원, 5개단체)	○장애인복지지원사업(23백만원, 5개단체)	100%
노인복지 지원사업	'14년	○대한노인회 활동비(22백만원, 1개소) ○어버이날 기념행사(1백만원, 1회) ○노인복지 활동지원(4백만원, 2회)	○대한노인회 활동비(21백만원, 1개소) ○노인복지활동지원(3백만원, 1회)	89%
	'15년	○대한노인회 활동비(22백만원, 1개소) ○어버이날 기념행사(2.2백만원, 1회) ○노인복지사업지원비(2백만원, 2회)	○대한노인회 활동비(22백만원, 1개소) ○어버이날행사지원(4.1백만원, 1회)	99%
아동복지 지원사업	'14년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12백만원/1회) ○어린이날 큰잔치(5백만원/1회)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12백만원/1회) ○어린이날 큰잔치(1백만원/1회)	76%
	'15년	○어린이날 큰잔치(13백만원/1회) ○어린이집 한마음잔치(10백만원/1회)	○어린이날 큰잔치(13백만원/1회) ○어린이집 한마음잔치 (10백만원/1회)	100%
여성복지 지원사업	'14년	○가평 여성대회(15백만원/1회) ○합동결혼식(10백만원/1회)	○가평 여성대회(5백만원/1회) ○합동결혼식(10백만원/1회)	60%
	'15년	○여성지도자 선진지견학(8백만원/1회) ○여왕의 교실 운영(14백만원/2회) ○여성장애인 일상생활훈련프로그램 (5백만원/1회)	○여성지도자 선진지견학(8백만원/1회) ○여왕의 교실 운영(14백만원/2회) ○여성장애인 일상생활훈련프로그램 (5백만원/1회)	100%
국가유공자 및독립유공자 복지 지원 사업	'14년	○기금 적립중	○기금 적립중	
	'15년	○문패달아주기사업(5백만원) ○호국보훈의식 향상 문화행사 (5백만원)	○문패달아주기 사업(5백만원/1회) ○호국보훈의식 향상문화행사 (5백만원/3회)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복지사업 기금의 적립 및 지원으로주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용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아동복지 지원사업 ○여성복지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 지원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 1회 15백만원 지원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용자사업 : 3가구 8.3백만원 지원
-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 5개 단체 23백만원 지원
- 노인복지 지원사업 : 1개단체, 1회 26.1백만원 지원
- 아동복지 지원사업 : 2회 23백만원 지원
- 여성복지 지원사업 : 3회 27백만원 지원
- 국가유공가및독립유공자 복지지원사업 : 2회 10백만원 지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해당없음
	'14	2012~2013년 사회복지기금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15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	15	신축적 집행	상
② 저소득주민생활 안정 용자사업	20	신축적 집행	상
③ 장애인복지지원사업	20	신축적 집행	상
④ 노인복지 지원사업	26	신축적 집행	상
⑤ 아동복지 지원사업	23	신축적 집행	상
⑥ 여성복지 지원사업	27	신축적 집행	상
⑦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 지원 사업	10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141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 재원은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 시까지는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충당하나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 이후에는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운용 재원을 조달 운용토록 계획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주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라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기금 운용

(표4-1)(사회복지기금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604	%	602	%	562	%
	전입금	300	50	300	50	180	3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0	6	42	7	28	5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2	16	85	14	176	31
	예수금						
	이자수입	162	28	175	29	178	3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604	%	602	%	562	%
	비용자성사업비	90	15	81	14	123	22
	융자성사업비	20	3			8	2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409	68	345	57	301	53
	예치금	85	14	176	29	129	2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표 4-1)(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35	%	40	%	39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8	53	25	63	25	64
	예수금						
	이자수입	17	47	15	37	14	3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5	%	40	%	39	%
	비용자성사업비	10	17	10	25	15	38
	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5	13	10	26
	예치금	25	73	25	62	14	3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표 4-1)(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용자사업)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147	%	124	%	177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40	27	42	34	28	16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4	57	57	46	124	70
	예수금						
	이자수입	24	16	25	20	25	1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47	%	124	%	177	%
	비용자성사업비						
	용자성사업비	20	16			8	4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70	46			81	46
	예치금	57	38	124	100	88	5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표 4-1)(장애인복지 지원사업)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122	%	126	%	128	%
	전입금	100	81	100	79	100	7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	1	1	1
	예수금						
	이자수입	22	19	25	20	27	2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2	%	126	%	128	%
	비용자성사업비	20	16	18	14	23	18
	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02	84	107	85	104	81
	예치금			1	1	1	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표 4-1)(노인복지 지원사업)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29	%	30	%	31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	6
	예수금						
	이자수입	29	100	30	100	29	9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9	%	30	%	31	%
	비용자성사업비	26	89	27	90	25	8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3	11			3	10
	예치금			3	10	3	1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표 4-1)(아동복지 지원사업)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123	%	126	%	77	%
	전입금	100	83	100	79	40	5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	13
	예수금						
	이자수입	22	17	26	21	27	3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2	%	126	%	77	%
	비용자성사업비	17	14	13	10	23	30
	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05	85	103	82	45	58
	예치금			10	8	9	1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표 4-1)(여성복지 지원사업)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30	%	33	%	42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	9	13	31
	예수금						
	이자수입	30	100	30	91	29	6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0	%	33	%	42	%
	비용자성사업비	20	69	15	45	27	6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0	31	5	15	13	31
	예치금			13	40	2	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표 4-1)(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 지원사업)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119	%	123	%	66	%
	전입금	100	84	100	81	40	6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19	16	23	19	26	3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9	%	123	%	66	%
	비용자성사업비					10	1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19	100	123	100	56	85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문화예술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조례 제1785호)
- 설치 및 조성목적 :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
- 설치연도 : 2003.12.03 조례 제1785호
- 일부개정 : 2009.01.07 조례 제2042호
- 일부개정 : 2009.10.01 조례 제2071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전문개정 : 2012.01.11 조례 제2233호
- 전문개정 : 2013.12.31 조례 제2344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상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157	131	0	131	1,288	135	0	135	

II.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 문화예술발전기금 총 적립금 : 1,288백만원
 - 이자수입 1백만원, 출연금 100백만원
-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가평군의 문화예술활동 및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 문화예술시설의 건립 재원 활용을 위해 운용·관리하고 있음
- 2013년까지 목표재원(10억원) 조성 후 문화예술 관련사업 실시예정이었으나, 군민의 문화 질적 향상과 문화시설 근접성을 위한 필요 재원으로 기금목표액 상향조정이 필요, 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기금 조성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조성목표액은 15억으로 증액함

2. 사업운영의 성과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2조 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을 위하여 기금 적립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건축, 사진등의 문화 예술 활동 ○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사업 및 조사연구활동 ○ 문화예술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전에 관한 사업 ○ 기타 군수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해당없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적립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적정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따라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 적립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지속 운영

(표 4-1)

(단위: 백만원)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94	%	130	%	131	%
	전입금	67	72	100	77	100	7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7	28	30	23	31	2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9	%	130	%	131	%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94	1000	130	100	131	100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1. 설치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회 진흥)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2. 설치목적 : 국민건강과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
3. 설치년도 : 2000. 1. 13(가평군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상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58	30	30	0	1,058	30	30	0	

II. 분석결과

1. 총 평

가평군체육진흥기금 목표액 10억원이 조성됨에 따라 2011년부터 체육진흥관련 사업을 실시 중 임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우수선수 육성지원 : 25,000천원
- 생활체육 교실 지원 : 5,000천원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조치계획 등

- 우수선수를 육성지원 함으로서 우수선수 저변확대 및 엘리트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함으로서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체육진흥기금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선수 육성지원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교실 지원을 통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체육진흥기금의 운영지침, 기금사업, 운영 등 분야별로 발전방안을 연구 개발하고 기금지원으로 더 많은 수혜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을 더 확보하여 우수선수육성 등 경쟁력 제고와 가평균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현대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은 군비 출연금으로 목표액인 10억이 조성되어 2011년부터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엘리트 선수들의 기량향상과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하는 등 체육진흥기금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30	100	30	3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대로 30,000천원을 집행함으로써 우수선수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 등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재정법 제110조 - 가평균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 군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 선수및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사업 -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해당없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은 군비 출연금으로 목표액인 10억을 확보하여 2011년부터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 활동을 통해 135,000천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체육 관련단체(연합회, 협회) 및 학교(생)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금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우수선수 육성 및 가평군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기금증액이 필요함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의거 체육진흥기금의 수익금으로 우수선수 육성사업 등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됨.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31	%	32	%	3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31	100	32	100	30	100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1	%	32	%	30	%
	비용자성사업비	30	97	30	95	30	10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	3	2	5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및 조성 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 설치연도 : 2010. 11. 10. 조례 제2144호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 2012. 01. 09. 조례 제2224호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 2012. 12. 03. 조례 제2290호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문개정 : 2014. 09. 12. 조례 제2369호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상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5	122	27	95	190	255	196	59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가급적 계량수치)
 - 관정개발 지원사업 : 2015년 1가구 / 12백만원
 - 상·하수도요금 지원사업 : 2015년 121가구 / 15백만원
- 잘된 점 :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만족도 높음
- 미흡한 점
 - 상하수도요금 지원사업의 경우 고령 및 장기 관외출타 등으로 지원금 신청시 누락자 발생

○ 발전방안

- 실질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회의와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한 기금의 중장기계획 수립

○ 기금의 존치필요성

-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를 재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향상 등을 위하여 본 기금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도 사업추진 및 기금의 중장기계획 수립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9	14	12.8	39	27	6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상수도급수공사 지원사업 (7백만원 3가구)	○ 상수도급수공사 지원사업 (5백만원 2가구)	71.4
	○ 상하수도요금 지원사업 (10백만원 89가구)	○ 상하수도요금 지원사업 (9백만원 81가구)	90.0
'15년	○ 관정개발 지원사업 (12백만원 1가구)	○ 관정개발 지원사업 (12백만원 1가구)	100
	○ 상하수도요금 지원사업 (27백만원 130가구)	○ 상하수도요금 지원사업 (15백만원 121가구)	55.0

- 정성적 성과 평가

관정개발 지원사업은 100% 완료되었으며 상·하수도요금 지원사업은 지원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관리가 필요함.

- 외부평가 결과(만족도 조사 포함) : 미 실시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상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본 기금은 2010년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마을회의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통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상수도급수공사, 상하수도요금 지원 등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실시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4년 9월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15년도부터는 반입폐기물 수수료를 당해연도 익월 10일까지 기금으로 전출하여 목적사업 추진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향상 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속 운영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해당 없음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130	%	109	%	217	%	
	출연금	119	92.2	65	59.6	122	56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0	7.7	44	40.4	95	43	
	예수금							
	이자수입	0.4	0.1	0.4	0.03	0.17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30	%	109	%	217	%	
	고유목적사업비	86	66.1	14	12.8	27	12	
	용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44	33.9	95	87.2	190	8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제 정) 2005.01.14 조례 제1835호
- (일부개정) 2007.12.12 조례 제1960호
- (일부개정) 2008.11.03 조례 제2025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09.10.01 조례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 2010.08.0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2.01.09 조례 제2225호
- (일부개정) 2013.07.22 조례 제2323호
- (일부개정) 2014.09.30 조례 제2372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405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상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283	400	314	86	1,368	409	300	109	

II.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재난사건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 사업에 사용하며,

- 기금의 운용·관리는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고 있음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사업, 장비 자재확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본 기금은 유지되고 활성화 되어야 할 기금임

2. 사업운영의 성과

-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50	192	42%	556	332	60%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응급복구사업 (428백만원) ○ 재난예방자재구입 (22백만원)	○ 응급복구사업 (67백만원) ○ 재난예방자재구입 (125백만원)	42%
'15년	○ 사전재해대책사업 (116백만원) ○ 응급복구사업 (200백만원) ○ 재난예방자재등 구입 (240백만원)	○ 사전재해대책사업 (183백만원) ○ 응급복구사업 (102백만원) ○ 재난예방자재등 구입 (47백만원)	60%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목적은 재난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시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신속한 응급복구는 물론 재난예방과 관련한 시설·자재의 조달로 각종 재난·재해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 할 수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p>각종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사업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사업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 적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상습 가뭄 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 대책사업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응급 복구 사업비, 복구 장비 및 자재비 등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에 긴급 집행하는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15	통합관리기금에서 분리하여 운영	별도계좌개설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업명	'15년 사업비	이유	불가피성 정도
① 사전재해대책사업	183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② 응급복구사업	102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③ 재난예방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 사업	47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합계	332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및 재난발생시 집행하는 사업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및 재난발생시 조기 응급복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함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381	%	505	%	1,683	%	
	출 연 금	354	93	364	72	371	22	
	보 조 금							
	차 입 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1,025	61	
	예치금회수			112	22	258	15	
	예 수 금							
	이자수입	27	7	29	6	29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27	%	247	%	1,683	%	
	고유목적사업비	369	86	192	78	314	19	
	용 자 금							
	인 건 비							
	물 건 비							
	예 탁 금	58	14	55	22			
	예 치 금					1,369	81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1. 설치 및 조성목적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광고물 등 정비
2.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 정) 2008.07.30 조례 제2012호
 - (일부개정) 2014.07.07 조례 제2365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상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9	80	0	80	109	83	0	83	

II. 분석결과

1. 총 평

-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읍·면 시가지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의 정비 및 경관 개선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 2015년도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으로 추진한 사업은 없는 실정이며, 2016년도에도 지출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 등 충분한 사업비 확보 후 기금목적에 맞게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용하고 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백만원,%)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2	93	76%	109	-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경관개선 사업비로 집행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특화거리 경관개선사업비 (100,000천원)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특화거리 경관개선사업 (63,833천원)	63.8%
'15년	해 당	없 음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광고물 등 정비	- 광고물 등의 정비 - 경관개선사업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 라인 개발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5년도는 지출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 등 충분한 사업비 확보 후 기금목적에 맞게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용하고자 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18	일반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정비	5	
	-표준 통합안내간판 정비	3	
	-도로변 노상적치물 등 단속용역	90	
	-불법광고부착물 제거 등 정비용역	20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 및 경관 개선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 등을 통한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설치 목적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 된 바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며,
- 기금의 용도에 맞는 경관개선 사업 등 추진을 위해 기금 적립을 통한 충분한 사업비 확보 후 집행하겠음.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		93	%	109	
	전입금			80	86	80	7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9	27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13	14		
지 출	합 계	%		93	%	109	
	비용자성사업비			64	6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09	100
	예치금			29	3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1. 설치 근거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가평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설치 및 조성 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함
3. 설치 연도 등
 - 연 혁 : 1986. 11. 11 : 식품진흥기금 설치(보건복지부)
 1989. 1. 1 : 식품진흥기금 지방이양(보건복지부 → 시·도)
 2000. 7. 27 : 식품진흥기금 분리설치(시·도, 시·군·구)
 - 설 치 : 2002년 2월(조례 제1727호)
 - 조례개정 : 개정 2002.10. 1 조례 제1744호
 (가평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2010.08.0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07.10 조례 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09.30 조례 제2372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성 목표액 : 없음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상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55	43	46	△3	152	45	34	11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식품위생업소 지도를 위해 18백만원을 집행하여 식중독에 예방 및 퇴·변태 영업에 대한 근절과 함께 모범음식점에 대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3백만원을 집행함으로써 건강하고 품격있는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

○ **잘된점, 미흡한점, 발전방안, 향후조치계획**

-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식품위생업소 지도를 통한 음식문화 활성화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과징금 수입의 감소와 기금사업의 활성화로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비 증액사유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해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실정임
- 따라서 식품진흥기금 운영지침, 기금사업, 기금운영 등 전 분야별로 개선, 개발 또는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식품위생업소가 피부로 느끼는 기금으로 발전시키고, 안전한 음식문화 육성 등 각종 기금사업을 가능케하여 식품업소의 경쟁력 제고와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

-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국회, 정부, 소비자등 모든 분야에서 과거 어느때보다도 높고, 실질적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책·제도적, 재정적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하여 식품위생법의 목적인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식품진흥기금의 본래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의 개발이나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일반회계의 경직성으로 인해 식생활 개선, 식품산업의 진흥 및 식품위생 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함
- 기금의 재원조성에 대한 법개정 건의 및 일반회계로 지원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의 전환 및 사업의 효과적인 분석 등을 통해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6	25	70	21	21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식품위생업소 지도를 위해 18백만원을 집행하여

식중독에 예방 및 퇴·변태 영업에 대한 근절과 함께 모범음식점에 대한 식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3백만원을 집행함으로써 건강하고 품격있는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시례비 (15명/30,00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 (29개소/6,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시례비 (15명/19,80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 (29개소/5,760천원) 	70%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시례비 (17명/18,00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 (28개소/상위 20% 6개소 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시례비 (17명/18,000천원) ○ 모범음식점 지원 (28개소/상위 20% 6개소 3,000천원) 	100%

- 정성적 평가

- 음식문화개선과 발전을 위해 행정적인 지도보다 진정으로 식품위생업소 및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직접 피부에 와 닿고 실감하는 기금사업의 추진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원 등을 통하여 한식 조리법의 변화, 식재료의 변화, 서비스제공 방식의 변화를 통한 원가절감, 음식물쓰레기 방지, 합리적인 가격구성, 독창성을 주는 상차림을 유도하는 하는 등 기금사업의 적극적 실천 및 사후관리로 사업의 효율성 도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포상금 지급의 지원 ◦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 그밖의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식품접객업소의 지도 및 계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등을 시행함으로써 식품업계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기금사업의 목적실현을 위해 노력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업명	'15년 사업비	이유	불가피성 정도
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지원	18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② 모범음식점 지원	3백만원	고유목적 달성	상
합 계	2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위생업소에서 징수하는 과징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말 현재 152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품안전사업분야 등에 21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과징금 수입의 감소와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이 가능토록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와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후 향후 조치계획
 -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품안전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필요성의 증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로 식품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임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
 - 식품위생법 제89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사업의 활성화로 기금의 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의 주요 재원인 과징금수입의 감소와 지속적인 이자율의 인하로 식품진흥기금 설치의 당초목적에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반 타 기금과 같이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을 통한 재원 조성이 절실히 요구됨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94	%	49	%	58	%	
	전 입 금							
	보 조 금	15	16	17	34.7	8	14	
	차 입 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2	44.7	22	44.9	15	26	
	예 수 금							
	이자수입	4	4.2	4	8.2	4	7	
	기타수입	33	35.1	6	12.2	31	53	
지 출	합 계	94	%	49	%	58	%	
	비용자성사업비	31	33	25	51	21	3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 탁 금	15	16	5	10.2			
	예 치 금	22	23.4	15	30.6	12	21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6	27.6	4	8.2	25	43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및 조성 목적 : 농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인을 육성하여 선진 농업기술시대에 부응한 경쟁력 있는 농업인조직체를 육성하기 위함
- 설치연도 : 2003.01.14. 조례 제1758호
(가평군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영조례)
- 일부개정 : 2005.02.03. 조례 제1826호
- 일부개정 : 2009.01.05. 조례 제2043호
- 일부개정 : 2009.10.01. 조례 제2071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일부개정 : 2009.11.01. 조례 제2081호
- 일부개정 : 2012.01.11. 조례 제2235호
- 일부개정 : 2014.12.31. 조례 제2399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상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07	29	23	6	1,006	29	23	6	

II.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총 적립액 : 1,006백만원
- 현재 목표액 10억 도달하여 수입,지출로 기금을 조성운영중에 있으며 이자수입으로 회원단체 자녀 및 우수4-H회원에게 장학금 및 농업인단체 행사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기금조례 5년 연장)

○ 잘된점

- 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현재 138 개 단체(3,873명)가 활동중에 있으며 기금을 활용한 장학금 및 행사지원으로 매년 가입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등 단체육성에 크게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3	23	100	22	23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장학금지급(12백만원,26명) ○ 농업인교육(10백만원,2일)	○ 장학금지급(12백만원,26명) ○ 농업인교육(10백만원,2일)	100%
'15년	○ 장학금지급(12백만원,26명) ○ 농업인교육(10백만원,2일)	○ 장학금지급(13백만원,42명) ○ 농업인교육(10백만원,2일)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영조례	농업발전을 위하여 경쟁력있는 농업인 조직체 육성	○ 농업인단체회원 자녀 및 4H회원 장학금 지급 ○ 농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체의 전문교육 및 연찬 ○ 농업발전을 위한 워크샵 및 토론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현재 기금목표(10억)에 달성하여 2014.12.31일 기금조례를 일부 개정(5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적립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적정
-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가평군농업인단체 육성기금은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인을 육성하여 선진농업기술시대에 부응한 경쟁력있는 농업인조직체를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현재 10억에 도달하였으며 앞으로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타개하고 쇠고기 수입개방 등 각국과의 FTA의 타결로 농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어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지속 운영.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32	%	30	%	29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6	19					
	예수금							
	이자수입	26	81	30	100	29	100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2	%	30	%	29	%	
	고유목적사업비	22	69	23	77	23	79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10	31	7	23	6	21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및 조성 목적 :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 설치연도 : 2008. 11. 03. 조례 제2026호(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 : 2010. 01. 15. 조례 제2096호
- 일부개정 : 2010. 07. 05. 조례 제2126호(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 2010. 08. 0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 2010. 10. 06. 조례 제2134호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일부개정 : 2012. 01. 09. 조례 제2219호
- 일부개정 : 2013. 07. 10. 조례 제2317호(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 2014. 09. 30. 조례 제2372호(가평군 통합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 : 2014. 12. 31. 조례 제2405호(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 2015. 03. 02. 조례 제2420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상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924	1,546	170	1,376	11,300	1,311	248	1,063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15년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선발인원 : 118명
 - 장학금 지급액 : 169,774천원

- 잘 된 점 : 장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내 우수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인재를 육성하는데 일조함.
- 미흡한점 : 관내 주민 및 자녀가 특정 사유로 인하여(ex)특수고 진학, 학교밖 청소년 등)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국내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조례상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어 가평균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발전방안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지역주민에 대해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현재 장학기금 이자액의 8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기금으로 재적립하고 있으나 향후 이자액의 10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장학생 선발인원을 확대하고자 함.
- 향후조치계획 : 관내 주민들이 고루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 관련조례 개정 검토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3	156	85	219	170	7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장학사업(183백만원, 101명)	장학사업(156백만원, 123명)	85%
'15년	장학사업(219백만원, 124명)	장학사업(170백만원, 118명)	78%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가평균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지역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달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업명	'15년 사업비	이유	불가피성 정도
① 장학사업	219백만원	○ 지속적인 장학사업(장학금지급)을 추진하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 조성된 재원의 적립으로 수익 발생을 통한 추가 재원 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금 형태 유지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중복 및 유사성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 적립기금 이자수익금 및 기부금 등
-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역 우수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안정성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장학기금의 존치는 필요하며
- 2024년까지 목표액인 300억원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금 조성할 예정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2,060	%	2,133	%	1,574	%
	전입금	1,850	90	1,850	87	1,077	6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	0	53	2	28	2
	예수금						
	이자수입	176	9	230	11	276	18
	기타수입	28	1			193	12
지 출	합 계	2,060	%	2,133	%	1,574	%
	비용자성사업비	117	6	155	7	170	1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890	90	1,950	92	1,354	86
	예치금	53	2	28	1	50	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